

## 등록금 반환에 관한 운영세칙

제정 1996. 3. 1    개정 2003. 8. 8  
 개정 1997.11.13    개정 2004.10.15  
 개정 2001. 6. 1    개정 2012. 2. 1  
 개정 2002. 2. 9    개정 2023. 8.22

제 1 조(목적) 이 세칙은 포항공과대학교의 학사과정과 대학원 과정의 재학생 및 신입생이 질병, 사망, 천재지변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등록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 이 세칙은 입학 후 포기한 자, 자퇴를 한 자, 미복학 제적자가 등록금을 본 대학에 기 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. (개정: 2023. 8. 22.)

제 3 조(반환의 제한) 등록금 반환은 제4조에 의거하여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학중 학칙에 의거 제적의 대상에 해당되는 자가 자퇴하는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 4 조(반환의 기준) ① 등록금 반환의 사유가 입학일 또는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.

②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, 등록금(입학금은 제외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반환한다.(2012.2.1일부 개정)

1.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: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
2.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: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
3.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: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
4. 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경우: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 5 조(반환신청기간) 삭제(2003. 8. 8)

제 6 조(준용) 이 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준하여 적용한다.

### 부 칙

이 내규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1997년 11월 13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2001년 6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등록금 반환에 관한 내규는 이 세칙으로 시행일 기준으로 명칭 개정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2년 2월 9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3년 8월 8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4년 10월 15일부로 개정하여 2004년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2012년 2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수업료 반환에 대한 사항은 2007년 3월 23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23년 8월 22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